

## 2 총회은급재단 보고

제108회기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은급재단 사업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이 사 장 오정호  
상임이사 박용규

### 1. 조 직

- 이 사 장: 오정호
- 상임이사: 박용규
- 이 사: 김종혁 하재삼 권규훈 송영식 김태영 피승민 배현수 정명철 김상기 이춘혁 강전우
- 감 사: 한병지 김완겸

### 2. 회 의

#### 1) 이사회

##### (1) 제1차 이사회

☞ 일 시: 2023. 10. 31.(화) 15:00

☞ 장 소: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신입이사장 오정호 목사가 취임 승낙 인사를 하니 참석자 전원이 정관 제2장 임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항에 의거 이사장 됨을 결의하다.
- ② 신입상임이사 박용규 목사가 취임 승낙 인사를 하니 참석자 전원이 정관 제2장 임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2항에 의거 상임이사 됨을 결의하다.
- ③ 법인현황을 실무국장이 보고하니 이사 하재삼 목사의 동의와 이사 권규훈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 ④ 법인 정기감사 보고를 감사 한병지 장로가 보고하니 시간외 수당 및 과중업무에 대한 보상 등 직원의 후생복지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조직(상임이사 박용규 목사, 이사: 송영식 목사, 감사: 한병지 장로, 김완겸 장로)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이사 피승민 목사의 동의와 이사 권규훈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⑤ 임원보선 건을 상임이사 박용규 목사가 보고하니 정관 제2장 제6조(임원의 선임) 및 임원 추천의 건을 근거로 정명철 목사(서대구노회, 대흥교회), 김상기 목사(서울한동, 이천은광교회), 이춘혁 목사(경일노회, 황금종교회), 강전우 목사(안동노회, 예천중앙교회)를 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다. 또한 당연직 이사장 취임으로 결원된 이사 보선은 총회 부총회장인 김종혁 목사(울산노회, 명성교회)를 선임하기로 이사 송영식 목사의 동의와 이사 권규훈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⑥ 제107회기 결산 및 제108회기 예산(안)을 실무국장이 보고하니 이사 피승민 목사의 동의와 이사 김태영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 ⑦ 상임이사 관사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상임이사 박용규 목사가 보고 하니 총회에서 지원되는



발전기금 50억이 입금된 후 지급하기로 하다. 총회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해 3년 이내에 반환하는 것을 문서로 받아 적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을 소위원회를 조직(상임이사 박용규 목사, 이사: 하재삼 목사, 송영식 목사)하여 맡기기로 이사 김태영 목사의 동의와 이사 권규훈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⑧ 외국 국적자 연금가입 제도 보완 및 관련 규정 개정 검토의뢰 건에 대하여 실무국장이 보고 하니 제107회기 제2차 이사회 결의[총회기금 0.1% 납입률 조정 및 기금급여의 차등 지급 및 연금제도연구위원회 최종보고를 근거로 소위원회를 조직(상임이사 박용규 목사, 이사: 하재삼 목사, 송영식 목사)하여 개정하기로 이사 피승민 목사와 이사 권규훈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다.

## 2) 제2차 이사회

☞ 일 시: 2023. 12. 14.(목) 15:2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소위원회 보고[1~2차]를 위원장 하재삼 목사가 보고 하니 위원에 이사 피승민 목사를 포함시켜 연기금운용지침 제정(안) 맡기기로 이사 권규훈 목사의 동의와 이사 배현수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② 연금 I 2024년 표준급여표(안)에 대하여 상임이사 박용규 목사가 보고하니 전년 대비 월보수액 1%(1안)을 적용하여 시행하기로 이사 권규훈 목사의 동의와 이사 피승민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③ 연금 II 적용금리에 따른 연금납입액 현황을 상임이사 박용규 목사가 보고하니 현재 적용금리를 동결하여 2024년 1월부터 2.9%를 적용하여 시행하기로 이사 배현수 목사의 동의와 이사 권규훈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④ 제108회 총회 결의사항 통지에 대하여 상임이사 박용규 목사가 보고하니 이사 피승민 목사의 동의와 이사 정명철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 ⑤ 벽제중앙추모공원 매매계약 후속 처리보고를 상임이사 박용규 목사가 보고 하니 이사 권규훈 목사의 동의와 이사 피승민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 3) 제3차 이사회

☞ 일 시: 2024. 3. 15.(금) 14: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소위원회 보고[3~4차]를 서기 송영식 목사가 보고 하니 이사 김태영 목사의 동의와 이사 이춘혁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② 연기금운영컨설팅 관련 건에 대하여 상임이사 박용규 목사가 보고하니 소위원회에게 맡겨 견적서(타견적 포함)를 받아 차기이사회에 보고하기로 이사 정명철 목사의 동의와 이사 강전우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③ 업무증가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에 대한 필요성을 상임이사 박용규 목사가 보고하니 신규 직원 채용(2명)과 수고한 직원들의 대우에 대하여 이사장 오정호 목사와 상임이사 박용규 목사에게 맡기기로 이사 피승민 목사의 동의와 이사 이춘혁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다.

#### 4) 제4차 이사회

☞ 일 시: 2024. 6. 25.(화) 15: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소위원회 보고[5차]에 대하여 위원 피승민 목사가 보고 하니 정관[별지] 개정 및 총회연기금은 영규정(안), 총회연기금 운영규정 시행세칙(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자산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박용규 목사에게 맡겨 조직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이사 정명철 목사의 동의와 이사 김태영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다. 연기금운영컨설팅 진행사항 건은 위원 박용규 목사가 보고하니 용역비 등 이후 진행은 상임이사 박용규 목사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이사 피승민 목사의 동의와 이사 이춘혁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② 법인중간감사 보고를 감사 김완겸 장로가 보고하니 피승민 목사의 동의와 이사 김태영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받기로 결의하다.

#### 5) 소위원회

##### (1)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2023. 11. 16.(목) 10:3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조직은 위원장 하재삼 목사, 서기 송영식 목사, 위원 박용규 목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다.
- ② 상임이사(총회총무) 관사 임차 건을 실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정관상 무수익자산 운용에 대한 적법성 및 잔금기일 기준 총회 발전기금 50억 입금이 어려운 상황과 현 계약(임차인) 변경 등 은금재단 자금으로 상임이사 관사 임차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다.
- ③ 연/기금규정 개정 건은 외국국적자 연금가입과 제107회기 제2차 이사회(2022.12.22.) 결의를 근거로 총회기금 0.1%하향 조정과 기금급여의 차등 지급에 따른 규정 개정을 포함하여 총회 연기금제도연구위원회의 최종보고 등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개정하기로 하다.
- ④ 법인 자금 보유현황과 연기금운용 지침(안), 자산배분 기준(예시)을 실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이사회에 관련 규정을 제정할 것을 결의하다.

##### (2) 제2차 소위원회

☞ 일 시: 2023. 12. 4.(월) 10:3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외국 국적자 연금가입 건은 아래와 같이 현행제도 운영 문제점을 해결 보완 등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바, 가입의 조건을 확정형 연금에 한하여 지급 시 수수료를 공제 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작성하기로 하다(가입 시 관련 확인서 제출). 이와 별도로 기존 연금 가입자들의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규정도 보완하기로 하다.



■ 현행제도 운영의 문제점
<p>▶ 연금관리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주민등록번호로만 인식하는 시스템 방식에서 외국인 인식에 대한 문제</li> </ul>
<p>▶ 수급자 사후 관리에 대한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사망 등 확인을 위해 매년 1회(12월) 관련 자료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현행과 같은 형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외국국적자의 관련 서류 징구가 모호</li> <li>- 유족연금(기존연금의50%) 및 미지급된 연금(확정형) 지급에 대하여 급여전환 지연 및 관리에 대한 혼선 우려</li> </ul>
<p>▶ 연금 급여 송금 시 환율적용 및 수수료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율 고저에 따른 급여 지급액 상이 및 화폐단위별 가치 차이</li> <li>- 은행 직접 송금 등 송금 절차의 번거로움</li> <li>- 해외송금으로 현 CMS 보다 높은 수수료 부담 : CMS 건당 100원 / 해외 건당 송금 시 5,000 ~ 18,000원 예상</li> </ul>
<p>▶ 기존 연금 가입자가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규정 적용의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자격상실로 해약 및 연금급여 일시금으로 지급</li> </ul>

② 기금 규정 개정 건은 제107회 총회 결의를 근거로 기금납입액을 년 예산의 0.2%에서 0.1%로 개정하기로 하다. 기금급여 차등지급과 관련해서는 현 수급자들과 연금가입상품별 지급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추후 재론하기로 하다.

### (3) 제3차 소위원회

☞ 일 시: 2024. 1. 19.(금) 10: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연기금운용지침(안)에 대해서 검토 후 차기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다.

### (4) 제4차 소위원회

☞ 일 시: 2024. 3. 15.(금) 11: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연기금운용지침에 대한 세부 방향성에 대해 논의 하다.

### 5) 제5차 소위원회

☞ 일 시: 2024. 6. 4.(화) 13:3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연/기금의 전체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을 개정 및 제정하기로 하고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하다.

가. 은급재단 정관(개정)

나. 총회연기금 운용규정(안)[제정]

다. 총회연기금 운용규정 시행세칙(안)[제정]

## 2) 기금/연금 현황

전기 : 2022년 9월 1일 ~ 2023년 8월 31일

당기 : 2023년 9월 1일 ~ 2024년 7월 31일

### (1) 기금

#### ① 가입 현황

전기말	신규	현재	증감
5,123교회	54	5,177교회	54

#### ② 수급자 현황

구분	(전기)			(당기)		
	인원	금액(月)	금액(年)	인원	금액(月)	금액(年)
은퇴기금급여	231	17,765,000	226,363,000	238	18,542,000	199,920,000
유족기금급여	2	25,000	300,000	2	25,000	275,000
은퇴일시금기금급여	6	0	11,900,000	3	0	4,700,000
합계	239	17,790,000	238,563,000	243	18,567,000	204,895,000

### (2) 연금

#### ① 가입 현황

전기말	신규	종도지급			연금지급			현재	증감
		일시금	해약	소계	은퇴	유족	소계		
2,030명	573	4	53	57	22	9	31	2,515명	

#### ② 수급자 현황

구분	(전기)			(당기)		
	인원	금액(月)	금액(年)	인원	금액(月)	금액(年)
은퇴연금급여	296	160,343,000	1,671,729,000	335	184,237,000	1,711,644,000
특례연금급여	29	7,992,500	114,758,000	26	6,995,900	94,076,500
유족연금급여	28	7,506,000	41,876,000	32	8,486,000	59,065,000
은퇴연금일시금	3	0	192,443,000	6	0	344,271,100
은퇴일시금	4	0	189,116,000	11	0	352,482,900
사망일시금	3	0	175,273,000	2	0	6,294,200
장례비	3	0	9,877,000	2	0	2,750,000
합계	366	175,841,500	2,395,072,000	414	199,718,900	2,570,583,700



3) 결산보고

(1) 대차대조표

전기 : 2022년 9월 1일 ~ 2023년 8월 31일

당기 : 2023년 9월 1일 ~ 2024년 7월 31일

계정과목	(당기)		(전기)	
	금액	합계	금액	합계
<b>자산</b>				
<b>I. 유동 자산</b>		<b>807,182,651</b>		<b>472,801,517</b>
(1) 당좌 자산		807,182,651		472,801,517
보통예금		443,489,892		118,914,156
선급법인세		363,692,759		353,887,361
(2) 재고 자산				
<b>II. 비유동 자산</b>		<b>64,592,035,697</b>		<b>51,758,882,016</b>
(1) 투자 자산		64,588,343,308		51,757,240,127
종합예금		9,757,789,293		2,558,489,750
단기대여금		146,000,000		146,000,000
장기금융상품		53,969,464,015		48,444,210,377
개인회원보조금		715,090,000		608,540,000
(2) 유형 자산		3,692,389		1,641,889
비품	9,418,960		7,368,460	
감가상각누계액(비품)	(5,726,571)	3,692,389	(5,726,571)	1,641,889
(3) 무형 자산				
(4) 기타 비유동 자산				
<b>자산 총계</b>		<b>65,399,218,348</b>		<b>52,231,683,533</b>
<b>부채</b>				
<b>I. 유동 부채</b>		<b>34,199,000</b>		<b>186,280,880</b>
예수금		507,087		791,267
가수금		33,691,913		185,489,613
<b>II. 비유동 부채</b>		<b>59,458,643,738</b>		<b>48,527,580,963</b>
퇴직급여충당금		120,914,980		120,914,980
기금책임준비금		16,784,479,953		11,536,525,653
연금책임준비금		42,553,248,805		36,870,140,330
<b>부채 총계</b>		<b>59,492,842,738</b>		<b>48,713,861,843</b>
<b>자본</b>				
<b>I. 자본금</b>				
<b>II. 자본 잉여금</b>				
<b>III. 자본 조정</b>				
<b>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b>				
<b>V. 이익 잉여금</b>		<b>5,906,375,610</b>		<b>3,517,821,690</b>
전기이월이익잉여금		3,517,821,690		1,994,815,788
당기순이익	2,388,553,920		1,523,005,902	
<b>자본 총계</b>		<b>5,906,375,610</b>		<b>3,517,821,690</b>
<b>부채와 자본총계</b>		<b>65,399,218,348</b>		<b>52,231,683,533</b>

(2) 손익계산서

전기 : 2022년 9월 1일 ~ 2023년 8월 31일

당기 : 2023년 9월 1일 ~ 2024년 7월 31일

계 정 과 목	(당기)		(전기)	
		금 액		금 액
<b>I. 매출액</b>		<b>19,999,262,812</b>		<b>13,837,615,681</b>
수입이자	2,361,732,176		2,307,469,862	
납입금수입	14,309,527,425		9,075,587,570	
기타수익	3,328,003,211		2,454,558,249	
<b>II. 매출원가</b>				
<b>III. 매출총이익</b>		<b>19,999,262,812</b>		<b>13,837,615,681</b>
<b>IV. 판매비와 관리비</b>		<b>17,744,224,182</b>		<b>12,339,186,149</b>
복리후생비	9,309,250		8,640,300	
교통비	1,515,900		2,586,200	
기본급	76,926,000		75,000,000	
상여금	34,096,400		28,558,000	
접대비	698,660		1,040,276	
통신(전화,인터넷)	1,700,990		1,466,460	
제수당	33,717,260		34,643,630	
퇴직급여			3,156,376	
세금과공과	5,486,470		5,849,620	
감가상각비			318,506	
보험료	3,399,840		2,905,680	
사무비(문구류)	2,649,720		2,621,699	
지급수수료	21,927,110		12,178,060	
광고비	5,395,000		15,157,400	
회의비	5,022,200		2,152,500	
전입액	14,309,527,425		9,075,587,570	
연금급여	2,804,789,406		2,639,818,744	
기금급여	204,895,000		238,563,000	
경조비			460,000	
교육비	4,367,000		3,120,000	
우편료	11,999,288		7,738,478	
인쇄비	2,665,630		5,671,892	
잡비	5,452,240		3,468,950	
S/W유지관리비	17,765,000		18,040,000	
법무비			300,000	
부담금(연합기관)	1,320,000		1,480,000	
기금관리운영비	179,598,393		148,662,808	
<b>V. 영업이익</b>		<b>2,255,038,630</b>		<b>1,498,429,532</b>
<b>VI. 영업외수익</b>		<b>235,961,399</b>		<b>86,100,207</b>
이사부담금	2,000,000		6,000,000	
잡수입	233,961,399		80,100,207	
<b>VII. 영업외비용</b>		<b>102,446,109</b>		<b>61,523,837</b>
잡손실	2		9	
선취이자상각	102,446,107		61,523,828	



계 정 과 목	(당기)		(전기)	
	금 액		금 액	
VIII. 법인세비용차감 계속사업이익		2,388,553,920		1,523,005,902
IX. 계속사업손익법세 비용				
XI. 당 기 순 이 익		2,388,553,920		1,523,005,902

## (3) 총자산 현황 요약

구 분	(당기)	(전기)
보통예금	443,489,892	118,914,156
종합예금	9,757,789,293	2,558,489,750
장기금융상품	53,969,464,015	48,444,210,377
개인회원보조금 외	861,090,000	754,540,000
합계	65,031,833,200	51,876,154,283

**[별첨] 정관개정 내용**

현 행(구)	개 정(신)	비 고
제 1 장 총 칙		
<b>제1조[명 칭]</b> 이 법인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b>제2조[소재지]</b>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b>제3조[목 적]</b> 법인은 예수그리스도 복음전파를 위한 효과적인 선교사업에 따른 지원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에 소속된 교직자들의 은퇴, 퇴직, 장애 및 소천 등에 따른 생활지원 및 노후생활과 유족들의 생활향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b>제4조[사 업]</b>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전도 및 선교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2. 정년, 은퇴, 퇴직, 장애를 당한 교직자에 대한 생활지원 사업 3. 소천 한 교직자의 유족들의 생활지원을 위한 사업 4. 은퇴교직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사업 5. 사회복지를 위한 장례문화, 납골시설의 <u>설치 및 관리사업</u> 6. 기타 본 법인의 목적 수행을 위한 임대 사업 및 기타 수익사업 등	5. 기타 본 법인의 목적 수행을 위한 임대사업 및 기타 수익사업 등	삭제  6→5 변경
제 2 장 임 원		
<b>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b>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총회장 당연직) 2. 상임이사 1인(총회 총무 당연직) 3. 이 사 13인 이내(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4. 감 사 2인		
<b>제6조[임원의 선임]</b> ① 임원은 총회규칙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연금과 기금을 납입한 자로 감사는		



현 행(구)	개 정(신)	비 고
<p>기금 가입 및 담임목사가 연금에 가입한 교회의 시무장로로 한다.</p> <p>⑤ 위 ④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이사회 개최 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총회장이 이사장에 총무가 상임이사에 취임한다.</p>		
<p><b>제7조[임원의 해임]</b>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li> <li>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li> <li>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li> <li>4. 이사로서의 직무를 태만하거나 그 품위를 오손하는 행위</li> <li>5. 재단에 손실금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li> <li>6. 심의하지 않는 업무를 공개하는 행위</li> <li>7.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li> </ol>		
<p><b>제8조[임원의 자격상실]</b>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즉시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임서를 본회나 사무국에 제출하는 행위</li> <li>2. 제6조(임원의 선임) ④항 연금, 기금을 해지 하는 행위</li> </ol>		
<p><b>제9조[임원의 선임 제한]</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li> <li>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한다.</li> <li>③ 정관 제7조[임원의 해임], 제8조[임원의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에 재 선임될 수 없다.</li> </ol>		
<p><b>제10조[상임이사]</b>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한다.</p>		제12조 ②항으로 변경 및 수정
<p><b>제11조[임원의 임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사장 1년</li> <li>2. 이 사 3년</li> <li>3. 감 사 2년</li> </ol> </li> <li>② 임원의 임기 중 교회 시무 은퇴 시 임기도 종료된다.</li> </ol>	제10조[임원의 임기]	수 정
<p><b>제12조[임원의 직무]</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li> </ol>	제11조[임원의 직무]	수 정

현 행(구)	개 정(신)	비 고
<p>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p> <p>② 이사는 재단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과 동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p> <p>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li> <li>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li> <li>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사항</li> <li>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사항</li> <li>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진술을 하는 것에 관한 사항</li> <li>6.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그 재정상태 및 행정사항에 대하여 감사 할 수 있다.</li> </ol> <p>④ 이사 및 감사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을 이사회 결의 없이 외부에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며 사무국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한다.</p> <p>③</p> <p>④</p> <p>⑤</p>	<p>추가(제10조에서)</p> <p>②→③ 수정</p> <p>③→④ 수정</p> <p>④→⑤ 수정</p>
<p><b>제13조【이사장의 직무대행】</b></p> <p>① 이사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를 선출하는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되고 출석이사 중에서 최고 연장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되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p> <p>④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p>	<p><b>제12조【이사장의 직무대행】</b></p>	<p>수 정</p>
<p><b>제14조【임원의 보수】</b></p> <p>임원에 대해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여비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p>	<p><b>제13조【임원의 보수】</b></p>	<p>수 정</p>
제 3 장 이 사 회		



현 행(구)	개 정(신)	비 고
<p><b>제15조[이사회의 구성]</b>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p>	<p><b>제14조[이사회의 구성]</b></p>	수 정
<p><b>제16조[이사회의 소집]</b>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 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③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 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p>	<p><b>제15조[이사회 소집]</b></p>	수 정
<p><b>제1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b>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 제3항의 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p>	<p><b>제1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b></p>	수 정
<p><b>제18조[회의록]</b>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 인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1. 일시            2. 장소            3. 참석 이사 및 감사의 명단            4. 의결사항            5.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하는 이사의 성명과 반대사유를 기재한다. 단, 반대하는 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로 한다.</p>	<p><b>제17조[회의록]</b></p>	수 정
<p><b>제19조[서면결의 금지]</b></p>	<p><b>제18조[서면결의 금지]</b></p>	수 정

현 행(구)	개 정(신)	비 고
이사회는 이사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없다. <b>제20조【의결 정족수】</b> ① 이사회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b>제19조【의결 정족수】</b>	수 정
<b>제21조【이사회 의결 사항】</b>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b>제20조【이사회 의결 사항】</b>	수 정
<b>제22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b>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건에 임원 자신과 은급재단이 직접 관계되는 일	<b>제21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b>	수 정
<b>제23조【연금/기금 재원 건전성 유지 의무】</b> ① 이사회는 지속적으로 연금/기금의 재원을 건전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연금/기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36조(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에 관한 규정에 반영한다.		제25조로 변경
<b>제 4 장 재 정</b>		
<b>제24조【재산의 구분】</b>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본 교단 산하 전국 교회와 교직자들이 납부한 은급기금과 기여금등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 과 같다.	<b>제22조【재산의 구분】</b>	수 정



현 행(구)	개 정(신)	비 고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b>제25조[재산의 관리]</b> 법인의 기본재산과 부동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4조(정관변경)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b>제23조[재산의 관리]</b>	수 정
<b>제26조[수입금 및 운영경비]</b>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 한다.	<b>제24조[수입금 및 운영경비]</b>	수 정
	<b>제25조[연금/기금 재원 건전성 유지 의무]</b> ① 이사회는 지속적으로 연/기금의 재원을 건전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연/기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38조[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에 관한 규정에 반영한다. ③ 이사회는 은급재단의 총회연기금운용수익이 무위험 수익률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장래 연/기금 재원 고갈이 예상되는 경우 납입금과 지급액을 조정하여 건전성과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제25조로 변경 추 가
	<b>제26조[총회연기금의 설치 및 조성]</b> ① 이사회는 연/기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규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총회연기금”을 설치한다. ② 총회연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납입금 2. 총회연기금 운용수익금 3. 적립금 4. 기부금 5. 기타수입 6. 결산상의 잉여금	추 가
<b>제27조[회계 연도]</b>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b>제28조[결산 및 예산편성]</b> 법인의 결산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b>제29조[결산잔액]</b>		

현 행(구)	개 정(신)	비 고
매 연도의 결산잔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금상환, 기금적립, 기타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b>제30조【유동자산의 관리】</b> 유동자산 운용 시 발생하는 수입과 총회소속 교회나 교직자가 납부하는 기금, 연금 등 동산은 사무국에서 상임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가장 안전하고 수익이 많이 발생하도록 관리한다.		
<b>제31조【회계감사】</b>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다.		
<b>제 5 장 사 무 부 서</b>		
<b>제32조【사무국】</b>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 보고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규정 및 보수 규정에 따른다.		
<b>제 6 장 보 칙</b>		
<b>제33조【법인 해산】</b>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총회산하의 기관이나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b>제34조【정관 변경】</b>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에 보고한다.		
<b>제35조【업무보고】</b>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제36조【위원회 및 특별위원회】</b> ① 정관 제26조【총회연기금의 설치 및 조	추 가



현 행(구)	개 정(신)	비 고
	<p>성]의해 설치된 총회연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각 상설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산운용위원회</li> <li>2. 리스크관리위원회</li> </ol> <p>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결의에 의하여 임원 중 5인 이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p> <p>③ 이사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각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p> <p>④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안건이 이사회 결의로 종결 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p>	
	<p><b>제37조[전문위원]</b>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사회는 은급재단의 업무를 위하여 금융 또는 투자분양전문가, 재무위험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각 분야별로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li> <li>2. 전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li> <li>3. 전문위원은 이사회가 요청할 시 회의에 참석하여 전문분야의 의견을 진술하며, 이사회는 복수의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전문위원은 결의권은 없다.</li> </ol>	추 가
<p><b>제36조[규칙 및 시행세칙 제정]</b>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 및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총회에 보고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 규정 및 시행세칙</li> <li>2. 연금 I 규정 및 시행세칙</li> <li>3. 연금 II 규정 및 시행세칙</li> </ol>	<p><b>제38조[규칙 및 시행세칙 제정]</b>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 및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총회에 보고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 규정 및 시행세칙</li> <li>2. 연금 I 규정 및 시행세칙</li> <li>3. 연금 II 규정 및 시행세칙</li> <li>4. 총회연기금운영규정 및 시행세칙</li> </ol>	수 정
부 칙		추 가
<p><b>제1조[시행일]</b>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인 등기에 관련된 사항은 법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경과 조치]</b>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p>	<p><b>제2조[경과 조치]</b>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p>	

현 행(구)		개 정(신)		비 고	
<p>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p> <p>2001. 6. 27 제정 2003. 2. 3 개정 2004. 7. 9 개정 2007. 6. 21 개정 2013. 10. 4 개정 2018. 5. 16 개정 2021. 5. 21 개정</p>		<p>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p> <p>2001. 6. 27 제정 2003. 2. 3 개정 2004. 7. 9 개정 2007. 6. 21 개정 2013. 10. 4 개정 2018. 5. 16 개정 2021. 5. 21 개정 2024. 0. 00 개정</p>			
<p>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p>		<p>제3조【설립당시의 임원 등】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p>		수 정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위	성 명	주 소
임태득	370320-1××××××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 260-2	이사장	임태득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 260-2
신현진	420215-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716-12	이 사	신현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716-12
송정현	470818-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60-17		송정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60-17
김장수	480720-1××××××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1337-11(3층)		김장수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1337-11(3층)
이양호	300115-1××××××	전북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721		이양호	전북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721
홍덕선	460203-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26-18		홍덕선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26-18
라도재	430315-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258 청계벽산아파트 107-1505		라도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258 청계벽산아파트 107-1505
권정식	430721-1××××××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542-1남영네오하이츠 101-1305		권정식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542-1 남영네오하이츠 101-1305
최양섭	430811-1××××××	경남 통영시 도천동 95-2		최양섭	경남 통영시 도천동 95-2
이영희	360130-1××××××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59-78		이영희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59-78
박원규	340617-1××××××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건영아파트 101-402		박원규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건영아파트 101-402
한희수	431010-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33-9 미원2차아파트 501		한희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33-9 미원2차아파트 501호
이봉재	330129-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58-4		이봉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58-4
하귀호	490410-1××××××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41-3 신동아아파트 38-401		감 사	하귀호
류재양	361210-	경상북도 경산시	류재양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송림리 388



현 행(구)		개 정(신)	비 고
1×××××× 용성면 송림리 388			
[별지] 기본 재산 목록 1. 부동산: 없음 2. 동 산			
구 분	내 역	금 액	
정기예금	외환은행	2,645,000,000원	
	한미은행	685,900,000원	
합	계	3,330,900,000원	